

##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0
----------	-----

제출년월일 : 2000년 3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16,672호. '99. 12. 31)에 따라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 주요 콜자

-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검사위원회선임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조)
-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2조 및 제3조)
- 위촉기간중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수당”으로 용어를 정비(안 제10조 내지 제13조)

### □ 조례(안) : 별첨

###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제46조의2

### □ 기타 참고자료 : 별첨

##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6조”를 “제46조의2”로 한다.

제2조중 “10인이하”를 “10인이내”로 한다.

제3조제4항중 “별표 제1호 서식”을 “별표 1”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 항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비는”을 “수당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일비의 계산)”을 “(수당의 계산)”으로 하고, 동조제1 항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한다.

제13조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별표 제2호”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구 분	액	수
수 당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2"여비지급 구분표상 부지사 상당액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제46조의2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이하로 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총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10인이내 - - - -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③(생략) ④도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u>별표 제1호 서식</u> 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③(현행과 같음) ④- - - - - - - - - -별표 1- - - -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도의회의원및 교육위원이 위원인 경우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 - 수당을 - - - - -

2

구 분	액 수
수 당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
여 비	(현행과 같음)

## 참고 자료

□지방자치법(부분발췌)

□지방자치법시행령(부분발췌)

## 관련 법규(부분 발췌)

### □ 지방자치법

#### 제125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결산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15조(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 ①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 ②~③ (생략)

#### 제46조의2(검사위원의 선임)

- ①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 5인 이상 10인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이내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